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. 4. 24 선고 2017가단261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11. L

12. M

변론 종결 2018. 4. 3.

판결 선고 2018. 4. 2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령시 N 전 195㎡ 중 별지 목록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0.1. 11.

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2, 6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1, 3, 4, 5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 이수현

